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 제안이유

 예산군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진료비 징수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진료비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등을 포함하여 의료 취약 계층 주민에 대한 의료보호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음

□ 주요골자

- 보건기관 진료수가중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수가중 치과 진료 및 유료 예방접종 비용을 실비 수준으로 별도 징수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안 제4조)
-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진료비 면제 및 약제비 지원 대상에 국가유공자등을 추가함 (안 제6조)

□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

- ○「지역 보건법」제14조
- ○「국민건강 증진법」제30조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보건소등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진료비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감면 대상자에 국가 유공자등을 포함함은 물론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보호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세부 조항별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본 조항과 타 조항의 중복부분을 삭제하여 본 조례 시행 목적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둘째, 기타수가(안 제4조)

제3조(진료수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치과 진료 및 예방접종 비용징수 규정으로서,

- 종전 서술식 표기를 도표로 개정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 구체적 비용을 적시하여 수가에 대한 공무원의 자의적 적용을 배제하고,
- 보건기관 진료 사항이 아닌 부분(의치보철,보조기)은 삭제하고, 구급차량 사용료는 면제 대상으로 안 제6조에 규정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하였으나
- 별표3에 규정된 유료 예방접종수가는 백신구입원가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1회용 주사기등 소모품비용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안 제6조)

- 종전의 규정은 구체적 감면 대상을 예시하지 아니하여 여건에
 따라 감면 대상이 달라질 우려가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 사회복지 시설, 의료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본인 부담금과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며
- 본 조항과 제7조와 배치되는 납기 연장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기 호 제출년월일 : 2005. 03. /6 제 출 자 : 예산군수

□ 제안이유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진료비 징수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진료비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하여 의료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의료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

□ 주요골자

- ○보건기관 진료수가중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수가중 치과진료 및 유료 예방접종 비용을 실비수준으로 별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 (안제4조)
-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진료비 면제 및 약제비 지원대상에 국가유공자 등을 추가 함 (안제6조)

□ 참고사항

- ㅇ 지역보건법 제14조
- ㅇ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 ㅇ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예산군조례 제 호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예산군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제증명수수료 징수와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타수가) 제3조에 규정하지 아니한 치과진료 및 유료 예방접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3」에 의거 징수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 2. 의료취약지역 · 사회복지시설 등 순회진료 및 거동불편노인 등 방문 진료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서의 의료지원
 - 4.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 및 진료
 - 5.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치과 예방진료
 - 6. 군 관내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진료
 - 7.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국민 건강증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 하여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제증명수수 료 징수와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 한 진료비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 여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제증명수수료 징수와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타수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보철, 보조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구급차량등 시설사용료와 치면세마(스켈링)는 실비기준 으로 별도정하여 징수 할 수 있으며,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기준에 의한 보건소와보건지소의 치과 1회 방문 수가를 적용하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한다.	제4조(기타수가) 제3조에 규정하지 아니한 치과진료 및 유료 예방접종 등에 소요되 는 비용은 별표3」에 의거 징수한다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2.의료취약지역·사회복지시설 등 순회진료 및 거동불편노인 등 방문진료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행사의 의료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4.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 및 진료 5.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치과예방 진료 6.군 관내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진료 7.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신·구 문 대 조 표

현 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폐기물 관리</u>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내의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서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주민보건의 향 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의 규정 에서 정한 가축을 말한다.

다만, 2마리 이하의 애완 및 방범용 개, 사슴 등 동물과 10수 이하의 애완 용 소조류와 꿀벌은 예외로 한다.

2.(생 략)

3.(생 략)

개 정 안

제1조(목적)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및 일정한지역 안에서-----

제2조(정의)----

1. "가축"이라함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 및 시행규칙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사육동물을 말한다.

2.(현행과같음)

3.(현행과같음)

『별표』 가축사육제하지역

구 분	읍면별	리 별	제한지역	
전 부 제한지역	예산읍	예산리1~6구	전지역	
	W	주교리1~2구	전지역	
	<u><신설></u>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u><신설></u>	<신설>	<신설>	
	삽교읍	두리1,3.4리	전지역	
	<u><신설></u>	<신설>	<신설>	
	<u><신설></u>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u><신설></u>	<신설>	

『별표』 가축사육제한지역

구 분	읍면별	리 별	제한지역
		예산1~7리	
		주교1,2.6.7리	
	예산읍	산성3~7리	전지역
	예산읍	창소3리	전지역
	예산읍	신례원1.3.4.5.리	전지역
		두1.2.3.4리	
	<u>덕산면</u>	읍내리	도시계획구역내
	.0	신평리	도시계획구역내
		북문리	도시계획구역내
		사동리	덕산온천개발지 역내

현 행	개 정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5 ·	18민주-	유공자 및 그 유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하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바.「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②보건소장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징수를 면제하거나.	②제1항 제6호 및 제7호 규정에 의하여 의약			
인료비송 본인구되고 경우를 인제하기다. 의약분업지역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민	분업지역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			
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별표 4	보험법 시행규칙 : 제9조제2항 별표4에서			
	정한 약국에서 부담할 본인부담금 중 최저			
에서 정한 약국에서 부담할 본인부담금	정액 본인부담금은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중 최저 정액 본인부담금은 조제한 약국	반아 지급 할 수 있다.			
의 청구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				
	별표3 를 다음3	과 같이	신설 하다.	
	별표3 를 다음3	과 같이	신설 한다.	
		* TT- *		
		* TT- *		
	[별표3] 치과전	보료 및 -	우료 예방접종 등 기타수?	
	[별표3] 치과전 구 분 치면세마	원료 및 국 기 준	유료 예방접종 등 기타수기 금 액	
	[별표3] 치과경 구 분 치면세마 (스켈링)	기 준 1회당	유료 예방점종 등 기타수기 금 액 20,000원 치과1회방문당수가중	
	[별표3] 치과전 구 분 치면세마 (스켈링) 치면열구전색	기 준 1회당	유료 예방접종 등 기타수기 금 액 20,000원 치과1회방문당수가중 본인부담금 전액 치과1회방문당수가중	

관련 법규 발췌

지역보건법 제14조

제14조 (수수료등)①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제30조 (수수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별표4)

②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영 별표 2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조건 및 본인부담액

요양급여	· 다비용총액에 관한조건	환자의 연 링	투약 일수	본인부담액
1.처방전에의하여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가, 1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
	나. 1만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	65세이상		1,200원
		65세미만		1,500원
2.처방전에 의하지 아니 하고 의약품 을 조제받은경우	가.4,000원을초과하는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40/100
	나.4,000원을초과하지아니한는경우		1일	1,400원
			2일	1,600원
			3일이상	2,000원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 보험료 수가 기준액을 적용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에는 그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